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홍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8
----------	-------------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 의 자 : 홍영진, 김도운, 박경흠
안영호, 정재환, 이명녀
강혜순, 김태욱, 문기호
문희성

1. 주 문

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발의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 성장을 막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폐기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나.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성장 동력이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임.

다.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래의 원칙을 준수하여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여야 함.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 국토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전국도시구군의회의장

4. 촉구문(안) : 붙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1만 구민의 뜻을 담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파기하고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만 낭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울산혁신도시는 조성 7년째를 맞이한 지금까지 중구를 비롯한 울산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며 ‘반쪽짜리’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 중구는 혁신도시 완공 첫해인 2017년, 인구 2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을 걸으며 2023년 현재 20만명을 겨우 넘는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 360개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추가 이전을, 중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환점으로 삼아 관련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의 미래 성장을 막고, 비혁신도시 지역에는 효과를 반감시켜 지방정부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침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즉 전국 10곳에 마련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뒤 이를 거점으로 주변지역에도 동반상승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만이 혁신도시의 경쟁력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울산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본래의 원칙을 준수해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충실하라.

하나, 울산시와 중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라.

2023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